

제8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1.2조(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8.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 추가하여, 제8.5조, 제8.8조 및 제8.9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1 2}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제1.2조(일반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 나. 정부조달
 - 다. 연안해상운송 서비스
 - 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마.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8.5조, 제8.8조 및 제8.9조의 적용범위는, 적용 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제8.2조에 규정된 적용범위로 한정된다.

² 제3항을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1장(투자)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5. 이 장은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자국 영역 내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³

제8.3조

내국민 대우⁴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제8.4조

최혜국 대우

³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 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서비스들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5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⁵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8.6조

⁵ 이 문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비합치 조치

1.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 3) 지방정부⁶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3조, 제8.4조,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8.8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의 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⁶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면허절차의 경우,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당사국이 제2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적 표준이 고려된다.⁷

4. 당사국이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수립한다.

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거부사유를 직접 또는 요청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신청인에게 알린다.

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신청의 경미한 오류나 누락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요구되는 추가 정보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⁷ “관련 국제기구”란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 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승인 수수료는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⁸
6. 면허 또는 자격 요건에 시험의 완료가 포함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시험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 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국내적으로 마련되어 있도록 보장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부속서 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으로 인하여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치의 비합치 측면, 또는 부속서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으로 인하여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9.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 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하게 발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검토한다.

제8.9조

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⁸ 이 항의 목적상,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인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2. 당사국이 제15.2조(공표)에 합치되게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제8.10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제8.11조 지불 및 송금⁹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¹⁰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 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마(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의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8.12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이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